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9일, 남인순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1.21.) 상정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 2. 19.)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남인순 의원)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초등 마을 방과 후 돌봄

(협동돌봄센터)'이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음. 협동돌봄센터는 비영리조합으로 결성되며, 돌봄의 수요자인 부모가 돌봄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함양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돌봄 종사자들 또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이에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협동돌봄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부 사단법인에서 초등 방과후 육아 공동체로 23곳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동돌봄센터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부모의 돌봄 선택지를 다양화하고, 부모와 돌봄 종사자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센터와 차별화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협동돌봄센터의 설치 기준,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고, 관련하여 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 제도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협동돌봄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만큼, 협동돌봄센터도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부칙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개정안에 따른 협동돌봄센터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일정 유예 기간 내에 법정 설치·운영 기준을 득(得)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음.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